

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✓표를 하며,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접수기관(재외공관 등/대한적십자사)	처리기간 신청 연도 6월 30일까지
사할린동포 신규 신청 []	국적	출생지(국가 및 도시명)	
	성명 (한글) (영문)	성별 [] 남 [] 여	사 진 3.5cm×4.5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
	생년월일	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)	
	여권번호	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년 월 일	
	주소	전자우편 주소	
	입주희망: [] 아파트 [] 양로원 [] 요양원 [] 전문요양원 결과통보 방식: [] 서면(우편) [] 전자우편 [] 문자메시지		

※ 아래 표는 신청인이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로 이미 결정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이거나,
이미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
사할린동포 (기존 영주귀국 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또는 사망한 사람)	성명 (한글) (영문)	성별 [] 남 [] 여
	생년월일	사망일(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만 작성)
	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, 사할린 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)	
	주소(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)	

※ 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동반가족은 아래 표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란을 작성합니다.

동반가족 (사할린동포의 배우자) []	국적	출생지(국가 및 도시명)	
	성명 (한글) (영문)	성별 [] 남 [] 여	사 진 3.5cm×4.5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
	생년월일	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)	
	여권번호	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년 월 일	
	주소	전자우편 주소	
	입주희망: [] 아파트 [] 양로원 [] 요양원 [] 전문요양원 결과통보 방식: [] 서면(우편) [] 전자우편 [] 문자메시지		

동반가족 (사할린동포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) []	국적	출생지(국가 및 도시명)	
	성명 (한글) (영문)	성별 [] 남 [] 여	사할린동포와의 관계 [] 자녀 [] 직계비속
	생년월일	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)	
	여권번호	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년 월 일	
	주소	전자우편 주소	
	입주희망: [] 아파트 [] 양로원 [] 요양원 [] 전문요양원 결과통보 방식: [] 서면(우편) [] 전자우편 [] 문자메시지		

(뒤쪽)

동반가족 (사할린동포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) []	국적	출생지(국가 및 도시명)		사 진 3.5cm×4.5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
	성명 (한글) (영문)	성별 [] 남 [] 여	사할린동포와의 관계 [] 자녀의 배우자 [] 직계비속의 배우자	
	생년월일	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)		
	여권번호	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년 월 일		
	주소		전자우편 주소	
	입주희망: [] 아파트 [] 양로원 [] 요양원 [] 전문요양원			
결과통보 방식: [] 서면(우편) [] 전자우편 [] 문자메시지				

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합니다.

이
도
지

사할린 동포	(서명 또는 인)
동반가족	(서명 또는 인)
동반가족	(서명 또는 인)
동반가족	(서명 또는 인)

※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이 신청인인 경우, 사할린동포의 서명 또는 인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(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 제외).

재외동포청장 귀하

첨 부 서 류	1. 사할린동포		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(韓人)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. 출생증명서 나. 제적등본 다.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에 따른 피해자 결정서 라.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	동 반 가 족	2.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	사할린동포의 배우자, 자녀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. 혼인증명서 나. 출생증명서 다. 가족관계증명서 라.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	
		3.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	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가. 사망한 사할린동포에 관한 제1호의 서류 나.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사할린동포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. 사할린동포 사망 당시의 배우자, 자녀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제2호의 서류	
		4.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, 해당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	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가.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 관한 제1호의 서류 나.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.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.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제2호의 서류	
	5. 공통 제출서류		가. 제출하는 서류에 같은 사람의 이름이 각각 다르게 적혀 있거나, 신청 시의 이름과 다른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이름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. 6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있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(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문서일 것)	

처리절차

```

graph LR
    A[신청서 제출] --> B[접수]
    B --> C[심사 및 결정]
    C --> D[결정 통지서 수령]
  
```

신청인 (국내) 대한적십자사 회장 (국외) 재외공관장 등 재외동포청장 신청인